

일본의 독도 영토에 대한 한국 관할권의 인정*

-‘한일협정’에서 ‘한일신어업협정’까지-

최 장 근**

(e-mail : nihonbu@daegu.ac.kr)

<목 차>

- | | |
|-------------------------------------|-----------------------------|
| 1. 들어가면서 | 4. 일본의 ‘대륙붕협정’에서의 한국 관할권 인정 |
| 2. ‘대일평화조약’의 독도처리에 대한 일본 주장의
모순성 | 5. 일본의 ‘신어업협정’에서의 한국 관할권 인정 |
| 3. ‘일본의 한일협정’에서의 한국 관할권 인정 | 6. 맺으면서 |

키워드 : 対日平和条約(Peace Treaty with Japan), 独島(Dokdo), 한일협정(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韓日漁業協定(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大陸棚協定(Continental Shelf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1. 들어가면서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지방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기 관으로서의 외무성¹⁾,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조정실²⁾, 해양정책연구소 도서자료센

*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정책중점연구과제)임(NRF-2055S1A5A5B8A02068830)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1) 「외무성」(<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외무성을 대표하는 과거와 현재 논리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즉,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

타³⁾, 지방정부로서는 시마네현⁴⁾과 오키노 시마츠⁵⁾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10포인트를 12개국언어로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선동하고 있다.⁶⁾ 그런데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국은 독도를 잠정적으로 한국영토로 처리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여 관할하게 되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서 한국의 독도 통치는 묵인되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회 의사록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본문(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한일협정과 한일 대륙붕협정, 한일 신어업협정에서도 한국의 독도관할권을 막거나 부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모순적으로 여전히 일본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⁸⁾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본 목적은 대일평화조약 이후 한일협상과 그 이후의 한일 양국 사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대일평화조약⁹⁾, 한일협정, 한일대륙붕협정, 한일 신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일본 국회의사

今書院, pp.248-273. 外務省(2008) 「竹島問題」 「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外務省.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pp.1-25.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377, pp.135-156. 外務省編(197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明治百年史叢書1 原書房, p.536.

- 2)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조정실」 (<http://www.cas.go.jp/jp/ryodo/>)(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 3) 「해양정책연구소 도서자료센터」 (http://islandstudies.oprf-info.org/jp/info_library/takeshima) (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 4) 「죽도」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시마네현을 대표하는 현재와 과거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田村清三郎(1996)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復刻板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6-160. 島根県(2005) 「竹島問題研究会」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 5) 「隠岐の島町」, 「죽도」 (<http://www.town.okinoshima.shimane.jp/www/genre/1000100000169/index.html>)(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 6) 한국외무부는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10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있다.
- 7) 그런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의했다. 광진오(2011.2) 「1954년 일본의회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추진발원과 배경분석」 『한국일본문화학보』 4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25-248.
- 8) 1951년 대일평화조약체결, 한일협정체결 당시의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대내적인 요인으로 정치적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법학자(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学出版会, pp.1-108.) 등이 왜곡되게 영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훗날의 정권들이 이를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실제로 독도가 일본영토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 9) 광진오(2012) 「일본의 독도무주지 선점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문화학보』 제5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97-216.

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일본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검토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통해 대일평화조약부터 신한일 어업협정까지 일본정부의 독도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는 점¹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2. 대일평화조약의 독도처리에 대한 일본 주장의 모순성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¹¹⁾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로 일본이 항복한 직후 바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잠정적으로 한국영토로서 「독도」를 포함해서 한반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시켰다.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최종적으로 「일본영토에서 분리되는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 한다」라고 하여 한국영토를 명확히 했다. 그런데 한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만일 SCAPIN 677호에서 잠정적으로 한국영토로 결정된 독도가 최종적으로 한국영토에서 제외된다면,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독도의 지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잠정조치가 최종적 조치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국이 조치한 것에 따라서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실제로 제외시켰다면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관할통치를 중단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주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폭격연습장 지정을 철회하여 한국영토로서 인정했던 것이다¹²⁾. 이러한 내용은 일본 국회에서 야당위원의 질문을 받고 일본정부가 이를 인정하였다.

10) 신용하(1996)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지식산업사, pp.175-201.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64-308.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p.150.

11)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일본국민들과 국제사회를 향해 선전하고 있다. 일본의무성 홈페이지 「10포인트」 참조. 신용하(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35-332.

12)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2016)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253-464. 독도연구보전협회편(1997)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독도연구보전협회, pp.180-217.

야당전문위원 가와카미는 1953년 11월 4일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죽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¹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는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에 관해 미국이 독도를 주미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을 한국의 항의를 받고 철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이 혼련지 지정과 제외문제는 죽도가 미군의 혼련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한국이 항의했고, 그 와중에 한국어민이 폭격 때문에 죽었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자 한국은 미국당국에 더 거세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공군사령관은 일본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죽도를 혼련지에서 제외한 후에 이 사실을 한국에 통고한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볼 때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의중은 어떤 것일까요? 이승만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보며 죽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미국측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¹⁴⁾ 즉, 가와카미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대일평화조약 비준국회에서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그렇게 때문에 오가타(緒方) 부총리께서 노동당(勞農黨)의 질문에 대해 평화조약에 의해서 죽도는 우리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리영토¹⁵⁾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평화조약에서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다고 답변해도 되지 않았을 까요?¹⁶⁾ 미국이 확실한 것을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¹⁷⁾고 말해둡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평화조약 상에서 죽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한 자료를 (국회에)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¹⁸⁾ 있습니다.」¹⁹⁾ 요컨대, 평화조약에서 죽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연습지의 폭격혼련지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죽도는 한국영토라는 주장이다.

13) 최장근(20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조작의 계보』 제이앤씨, pp.225-250.

14) 가와카미위원, 중의원-외무위원회-5호, 1953년 11월 4일,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 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동북아역사재단, p.192.

15)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16)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확실히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7)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18)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 가와카미위원, 중의원-외무위원회-5호, 1953년 11월 4일,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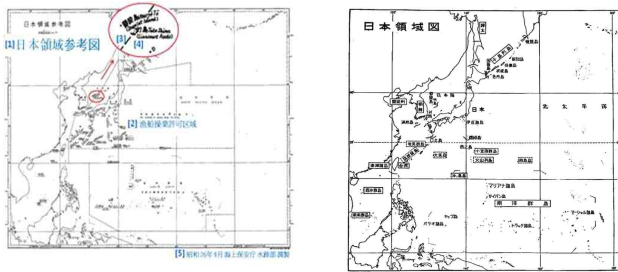
미국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한일 간에 영토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와카미(川上)위원은 1953년 11월 4일 미일행정협정²⁰⁾과 죽도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작년(1952) 7월 26일에 이 죽도가 미군의 훈련지로 일본이 제공한 구역 중의 하나로 추가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이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항의 때문인지 미국은 이곳을 리스트에서 제외하였고, 게다가 이 제외 사실을 미국당국의 한국에 통고했다고 합니다.」²¹⁾ 이에 대해 국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는 죽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가와카미의 주장에 대해 「(죽도문제는) 평화조약의 내용에 일본에서 벗어나는 영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토는 일본 고유영토로 그대로 일본에 귀속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도는 당연히 일본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대해 연합국 측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²²⁾ 즉, 「저의 해석」은 일본영토이지만,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한 「연합국 측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은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연합국측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국회 중의원의회에서 배부된 일본 해상보안청이 1951년 8월 대일평화조약 체결(1951년 9월8일) 직전에 발행한 「일본영역참고도」(아래의 왼쪽 그림)에서도 독도는 한국영토로서 표기했다. 일본정부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처리되었음을 공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영토를 보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이를 옹호하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20) 일본정부는 미일행정협정에서 독도를 미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은 옳지 않다.

21) 가와카미(川上)위원, 중의원-외무위원회- 5호, 1953년 11월4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p.189-190.

22) 국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지방행정위원회-4호, 1953년 11월 5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96.



또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난후, 1952년 6월 「일본영역도」를 작성했다.²³⁾ 그곳에도 일본 의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했다. 이를 보더라도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한일협정에서의 한국 관할권’ 인정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²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독도영유권의 귀속문제였다.²⁵⁾ 일본은 자신의 ‘죽도’ 영유권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자,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위탁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 한일협정 안에는 ‘한일 양국의 현안문제는 평화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의 조정으로 해결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여기에서 ‘현안문제’가 독도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약체결 이후 한국은 독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여 한일 양자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²⁶⁾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이 옳은지, 한국의 주장이 옳은지, 일본국회에서 한일협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야당전문위원과 정부위원 사이의 질의응답을 통해 고찰해보려고 한다.²⁷⁾

23)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p.3-21.

24) 본장의 한일기본조약과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전후한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인식-일본정부주장의 모순성과 한국정부 논리의 보완점을 중심으로-」(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2016)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313-386.)를 수정 보완한 것임.

25) 역사적 측면에서는 일본영토로서 근거가 없다. 송휘영(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일본문화학보』 6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8.

26)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 백산자료원, pp.157-172. 최장근(2008)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p.135.

사회당의원 사사키 고조(佐々木更三)(1965년8월2일)과 아키야마 조조(1965년 8월3일), 가메다 도쿠지 위원, 오카다 쇼지(岡田宗司)는 한일협정의 성격에 대해 「일본 고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8억 달러 이상을 한국에 지불하는 한일조약이 한국민들에 환영을 받기는커녕 비난과 반대 당하면서까지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일본국민의 혈세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도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²⁸⁾ 「죽도귀속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를 남기고 또 수차례 부당한 양보를 감내하면서까지 협정체결을 왜 서둘렀는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 압력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총리와 외무대신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²⁹⁾ 「오늘 아침 NHK방송에 따르면 죽도는 한국영토라는 것을 시이나 외무대신도 인정했다는 의미의 발언을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한국국회에서 발언했다고 합니다.」³⁰⁾ 「한국의 국회의사록에 의하면 “사토총리가 이동원 외무장관을 만나서 말하기로는 독도문제, 즉 일본인은 이를 독도라고 하지 않고 죽도문제라고 합니다. 어제 참의원선거 연설에서 죽도문제에 대해 이번에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회담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³¹⁾고 했다.

즉 야당위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일협정에서 일본정부가 8억달러³²⁾를 지불하면서 독도영유권을 한국에 양보했다. 심지어는 사토총리가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체면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노하라 위원이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국측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면서 시이나 외무대신은 「즉 양자가 양해했다는 일치점이 그런 문구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할 문서라도 교환했는가, 교환했다고 하면 또 그 문서의 증거서류는 무엇인가 하고 따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양자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³³⁾ 「물론 서로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27) 이하 3장의 한일협정 관련 내용은 독도학회와 한국일본근대학회에서 발표하여 수정 보완한 내용임.

28) [192/254]-참의원-본회의-3호, 1965년 8월 2일,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878.

29) [192/254]-참의원-본회의-3호, 1965년 8월 3일,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 880.

30) 가메다 도쿠지 위원 [226/254] 50-참의원-한일조약 등 특별위원회-5호, 1965년 11월 26일,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037.

31) 오카다 쇼지(岡田宗司)의 발언, [226/254] 50-참의원-한일조약 등 특별위원회-5호, 1965년 11월 26일,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037.

32) 실제로는 6억불(유상3억불, 무상2억불, 민간차관 1억불)임

래서 이 문언이 완성되었습니다。」³⁴⁾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 쌍방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했고 그리고 이 문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³⁵⁾라고 답변했다.

즉, 노하라 위원이 한국이 양해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의에 대해 외무대신은 상호신뢰에 의한 것으로 양자의 합의가 문헌에 응축되어 있다고 했다. 시이나는 독도밀약³⁶⁾과 같은 입증할 문서가 존재함을 암시했다.

독도밀약과 관련해서 노하라 위원이 「그렇다면 죽도문제가 이 교환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뭔가가 꼭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당신은 주고받았다³⁷⁾고 하는데 상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략) 여기 발표된 합의의사록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근거가 될 만한 뭔가를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죽도 포기나 다름없습니다。」³⁸⁾라는 질문에 대해, 시이나 외무대신은 「일일이 글자나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해 합의의사록에 쓰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두로 상의해서 교환공문의 문구가 완성된 것입니다.³⁹⁾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⁴⁰⁾라고 했다.

즉, 일본정부가 교환공문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한다고 한국과 약속했다는 것을 믿으려면 일본정부가 「주고받았다」고 언급한 합의내용을 제시해야한다. 제시하지 않으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정부는 「충분히 구두로 상의했다」고 하며 합의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것은 「독도밀약」이 일본에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총리는 반론하지 못했다.

한일협정에서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사토 총리의 생각은 「이 ‘죽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중략) 양측(한

33) [193/254] 49-중의원-예산위원회-2호, 1965년 8월 4일, 전계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884.

34) [193/254] 49-중의원-예산위원회-2호, 1965년 8월 4일, 전계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884.

35) [193/254] 49-중의원-예산위원회-2호, 1965년 8월 4일, 전계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883.

36) 한국이 일본의 주장에 양보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내용임. 즉 한국의 독도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37) 「비밀문서」를 염두에 둔 것일까? 비밀문서의 효력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38) [193/254] 49-중의원-예산위원회-2호, 1965년 8월 4일, 전계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887.

39) 비밀문서의 존재를 의미함.

40) [193/254] 49-중의원-예산위원회-2호, 1965년 8월 4일, 전계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887.

일)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즉, 사토총리는 외무대신이 교환공문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한국이 한국영토라는 입장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교환공문으로 해결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곧 분쟁지역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하라 위원은 한국이 죽도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여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으면 한일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¹⁾ 또 사토총리는 한일협정에서 독도문제를 일괄타결로 해결하길로 약속한 것에 대해 ‘죽도’문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환공문」이 죽도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향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죽도」를 양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⁴²⁾

사실 노하라 위원은 교환공문에 ‘죽도’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는데, 시이나 외무대신이 ‘구두에 의한 독도밀약’과 같은 것이 존재했었다는 말은, 한국이 너무 완강하여 일괄타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토총리의 솔직한 발언에 의해 교환공문에서 독도문제를 다룬 것이 맞다고 수긍했던 것 같다. 사실 교환공문에 독도명칭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하라위원의 주장처럼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협정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교환공문에 독도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토총리가 발설한 것처럼, 법리적 해석으로는 독도영유권을 포기했다고 봐야한다.

4. 일본의 ‘대륙붕설정에서의 한국 관할권 인정

유엔이 1968년 동중국해에 석유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1970년 1월 1일 대륙붕에서 석유·천연가스 등을 개발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외국석유회사들과 탐사개발을 계

41) [193/254] 49-중의원-예산위원회-2호, 1965년 8월 4일,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889.

42) 사토총리의 발언, [227/254] 50-참의원-한일협정 등 특별위원회-6호, 1965년 11월 27일,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047.

약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양국은 1970년 11월부터 대륙붕 문제에 관해 교섭을 시작하여 1974년 대륙붕협약을 체결했다. 이때에 야당전문위원들은 죽도를 기점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³⁾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한일 대륙붕 협정(위키백과 참조)

공명당 중의원 세노 에이지로(瀨野栄次郎)는 1976년 3월 4일 연안 12해리 및 경제수역 200해리에 대해 「드디어 3월 15일부터 뉴욕에서 제3차 해양법회의가 개최됩니다.」 3월 15일부터 해양법회의가 시작되면⁴⁵⁾ 「이번 해양법회의에 있어서 결론이 나올지 여부를 불문하고 12해리를 설정한다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문제와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북방영토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구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 4개 섬, 그리고 죽도 및 센카쿠제도(尖閣諸島)의 취급 등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⁴⁶⁾라고 하여 영해와 경제수역 설정에 있어서 ‘죽도기점’을 주장했다.

농림성 사무차관 가메나가 도모요시(亀長友義) 참고인은 1976년 5월 13일 대륙붕조약에 관해 「세계적으로 연안국의 자원획득 사상이 매우 강해져」 「대륙붕 조약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대륙붕은 대륙 끝에 있는 것으로 200해리 이상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근처와 같이 매우 대륙붕이 짧

43) 최장근(2014) 「1970년대 북부대륙붕협정에 관한 일본국회의 논쟁」 『일본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p.269-304.

44) 이하 4장의 대륙붕협정 관련 내용은 독도학회와 한국일본근대화회에서 발표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이번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여 투고하게 됨.

45) 「세노(瀨野)」[060/219] 77 -중의원-농림수산위원회- 4호, 1976년 3월 4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2.

46) 「세노(瀨野)」[060/219] 77 -중의원-농림수산위원회- 4호, 1976년 3월 4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2.

은 곳도 있습니다.] 47) 「북방영토, 죽도, 센카쿠제도의 귀속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섬뿐만 아니라 그 섬 주변의 200해리도 한 국가에 귀속될 것인데, 만약 일본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큰일이 되어 버립니다.] 48) 라고 하여 가메나가 사무차관은 죽도의 영유권을 확보하는 일은 곧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당 중의원 가와카미 다미오(河上民雄) 의원은 1976년 5월 7일 대륙붕 설정에 대해 「죽도와 한국과 일본의 산인(山陰) 지방(혼슈의 서부 중에 동해에 면하는 지방) 3개를 두고 하나의 중심점을 선택하면 좌표 35가 아닌 조금 서남쪽에 중심점이 있으며, 거기를 연결하는 편이 전문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닌가, 35라는 것은 다만 한국이 좌표 35를 선택해서 이에 맞춘 것뿐이라는 의문이 듭니다만, 정말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까요?» 49) 「좌표 35에서 출발하여 한일 양국 영토의 중간선을 지난다고 하면 어느 쪽을 지나는 것입니까? 즉 죽도의 동쪽을 지나는지, 서쪽을 지나는지요?» 50)라고 하여, 대륙붕 경계를 위한 가장 과학적인 중간점이 좌표 35도의 서남쪽인데, 35도를 중심점으로 한 것은 한국이 결정한 것에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조약국장 다테 무네키(伊達宗起)는 죽도와 울릉도는 「절해의 고도」이기 때문에 이들 섬은 중간선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51)

이에 대해 공명당 중의원 와타나베 이치로(渡辺一郎)는 「지난 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오가사와라제도의 가장 남단에 섬이 탄생하려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아마도 활화산이며 탄생하자마자 그 지역에 영해 200해리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양면적에 대해 일본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해고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선 설정을 위한 기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래 권한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2)라고 하여 간조 시에는 보이지 않는 ‘오가사와라제도’는 콘그리트

47) 「가메나가 도모요시(龜長友義) 참고인」 [062/219] 77 -참의원-농림수산위원회- 7호, 1976년 5월 13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5.

48) 「가메나가 도모요시(龜長友義) 참고인」 [062/219] 77 -참의원-농림수산위원회- 7호, 1976년 5월 13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7.

49) 「가와카미(河上) 위원」 [061/219] 77 -중의원-외무위원회- 6호, 1976년 5월 7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3.

50) 「가와카미(河上) 위원」 [061/219] 77 -중의원-외무위원회- 6호, 1976년 5월 7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4.

51) 「다테(伊達) 정부위원」 [061/219] 77 -중의원-외무위원회- 6호, 1976년 5월 7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4.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200해리 기점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명당 중의원 와타나베 이치로(渡辺一郎)는 독도와 관련하여, 「현재 죽도에 있어서 한국 해양경찰대원이 5명 내지 10명이 교대로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을 방치한 채로 북부경계확정을 제창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⁵²⁾ 「죽도가 획정한 것은 북부가 아니라 중부입니다. 중부경계확정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협상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하여 북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부라고 호칭하며 이를 국회에 가지고 와서 마치 북부지역에서 한일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환공문에 죽도라는 것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측에 구실을 주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죽도문제를 협상할 단서조차 없습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있어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체결되었을 때 죽도를 빠뜨린 것은 일본정부입니다.»⁵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묵인하는 형태로 북부경계확정을 제창하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에서 교환공문에 독도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단서가 되어 협상능력이 없어서 독도기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묵인하는 형태로 북부대륙붕협정에서 독도기점을 포기했던 것이다. 또한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서 ‘현안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중재를 포함하여 외교로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 현안문제가 독도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의 독도 실효적 점유를 인정한 것이 된다.

5. 일본의 신어업협정에서의 한국 독도 관할권 인정

5.1 영토문제 제외한 잠정합의수역에 의한 어업협정 체결

1996년2월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표되고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

52) 「와타나베(渡辺一) 위원」 [06 4/219] 77 -중의원-외무위원회- 10호, 1976년 5월 19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51.

53) 「와타나베(渡辺一) 위원」, [06 4/219] 77 -중의원-외무위원회- 10호, 1976년 5월1 9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49.

54) 「와타나베(渡辺一) 위원」 [06 4/219] 77 -중의원-외무위원회- 10호, 1976년 5월 19일,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253.

해리가 적용되게 되었고, 한일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을 했다. 일본은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원했다. 그러던 와중에 김영삼대통령이 독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울릉도에서 기공식을 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의 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1년간 유효기간을 제시하여 한일 신어업협정 체결을 한국정부에 강요했다. 한일 신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지위결정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일 신어업협정 정국에서의 국회의사록 기록을 통해 검증해보기로 한다.

요시다 유키히사는 어업협정의 쟁점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올해 1월 23일에 일본이 현행 협정의 종료통고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김영삼정권의 뒤를 이은 김대중 정권과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략) 이 협의에서는 한일 간의 최대의 대립점인 죽도 주변의 잠정수역 넓이를 둘러싼 문제가 보류되고 어업자원 관리 면부터 협의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⁵⁵⁾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오부치 게이쥬 국무대신은 「한일 어업문제는 요시다 선생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달 21일에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에서 어업관계자 대화를 통한 분위기 조성을 정부도 지원하면서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⁵⁶⁾ 「또 이른바 죽도 주변 문제에 있어서는 전 장관분과 선을 긋는 문제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서 최종 단계에 도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 협정에 있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일단 내년 1월을 기해 현 협정의 효력을 잃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협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협정을 위해 지금 말씀 드린 협의를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양측 모두 열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고자 합니다.」⁵⁷⁾라고 하여 「죽도 주변에 선을 긋는 문제」에서 일본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1965년 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다카노 히로시는 기존 협정 파기로 인한 「어업수역과 잠정수역」이 없어서 어업질서의 혼란상태에 대해 「현행 협정은 1월 23일에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고하였으므로 1년간 유효하지만 그때까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UN해양법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좋다고 하는

55)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88.

56)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88.

57)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88.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죽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국측이 현재 실효적 지배, 즉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현실로 보면 어업협정, 그리고 잠정수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통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⁵⁸⁾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나미 고레시게 정부위원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죽도’ 주변 해역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느 쪽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든 분명하지 않는 수역이 나타나게 되어 어장의 혼란이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⁵⁹⁾라고 하여 일본은 어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요구하는 방안을 강압적으로 한국에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한일 신 어업협정의 체결 방법에 대해 덴 히데오()는 「이번 중일 어업협정의 또 주목할 만한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센카쿠제도라는 이른바 영토문제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냉정하게 이를 언급하지 않고 어업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한일 신협정에서도 ‘죽도’의 경우는 잠정수역 안에 들어가고 중일의 경우는 그 바깥에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영토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한일 쪽도 중일처럼 의미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외교 관계에서 보자면 이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영토문제를 제외하고 어업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아나미 고레시게() 정부위원은 「협정 협상 도중에 그 전망에 대해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위를 봐서 말씀드리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협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이 지혜를 모아서 영유권 문제를 어업협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조정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계선을 하나의 선으로 그으면 어느 쪽인가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잠정조치수역이라는 형태로 이 문제를 어업협정 안에서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점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하나의 공통 인식으로서 기본으로 삼아 진행시켜 나갈

58)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89.

59)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89.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⁶⁰⁾라고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잠정합의수역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어업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5.2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과의 무관성

야시로 위원은 한일 신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와의 관련성에 관해, 「현행 협정⁶¹⁾은 내년 1월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한일어업은 무질서한 무협정시대를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이 서로 많이 양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만, 그러한 양보의 정신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자원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매우중요하다.」⁶²⁾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토인 죽도의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대응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⁶³⁾라고 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고무라 국무대신은 「어업협정과 관계를 말씀드리면 1996년 3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UN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문제에 대해서는 ‘죽도’영유권에 관한 문제와는 별도로 협의하는데 합의했으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대로 ‘죽도’문제를 보류한 상태로 이번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만, 당연히 ‘죽도’ 영유권 문제가 이번 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⁶⁴⁾라고 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제외하고 어업협정⁶⁵⁾에 국한해서 체결했기 때문에 독도영유권과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중일간의 어업협정의 체결에 관해서 중국과는 중일 양국이 서로 센카쿠제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측이 후세가 현명하

60)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p.1189-1190.

61)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으로 신어업협정이 체결되면 ‘구 한일어업협정’이 된다.

62)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5.

63)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5.

64)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5.

65) 일본 의회 의사록에는 1998년 6월 18일 「죽도의 영토권 확립과 한일 어업협정의 조기체결에 관한 진정서(마쓰에시 도노마치 시네마 현의회 내 사사키 유조(제509호) 그리고 1998년 9월 2일 「죽도의 영토권 확립과 한일 어업협정의 조기체결에 관한 진정서(도쿠시마시 반다이쵸 도쿠시마 현의회 내 다와라 데쓰타로(제12호)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게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1998년 10월 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6호)에서의 야시로 위원은 신한일 어업협정 이후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인식에 대해, 「한일 신 어업협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1999년 1월자로 현행협정(1965년 어업협정-필자주)의 효력 상실, 무협정상대 돌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무계획적인 남획을 제한하고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문제와 영토문제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렇더라도 저는 영토문제는 확실히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정부위원회 확인을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만, 영해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이는 연안국 영역의 일부이며, ‘죽도’에 대해서는 1954년 이후⁶⁶⁾로 일본의 영토로 그 소유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까?»⁶⁷⁾ 그리고 「죽도 연안은 일본의 영토이므로 죽도에서 12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일본의 어선이 조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좋습니까?»⁶⁸⁾라고 하여 이번 어업협정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죽도기점 12해리가 일본의 영해가 되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아나미 정부위원(장관)이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한국측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⁶⁹⁾라고 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12해리에서 일본이 배타적인 영해로서 활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것은 한일 신 어업협정에서 독도 및 주변 영해의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3 독도문제의 전망

독도는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국의 영토처리에 의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의 통치상태를 묵인했다. 그런데 일본이 사실과 달리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66) 1954년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지고 한국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여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즉 이것은 일본이 한국정부에 대해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67)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6.

68)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6.

69) 전개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7.

실제로 한국이 독도를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일협정, 한일대륙붕협정, 한일 신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관할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향후 독도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과제이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한국의 관할권을 문제시하기도 한다.

니시무라 신고의원은 한국의 독도 점유 관할 상태에 대해 「일본국민은 일본 헌법에 의거해 죽도에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한국의 행위는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죽도라는 버젓한 일본의 영토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일본 국민이 외국 군대에 의해 쫓겨난다면 이들 군대를 격파해서 외국 군대의 침략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가 아닐까」⁷⁰⁾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국무대신은 「자위대법 3조에 ‘자위대의 임무’로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침략 및 간접적인 침략에 대해 일본을 방위하는 일을 임무로 삼으며, 필요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에 관여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적하신 것처럼 방위 출동의 경우에는 급박한 불법침해, 또는 대체수단이 없을 것, 또는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대응할 것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문제가 그러한 방위 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 행동과 같은 것을 바로 자위대가 취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종래부터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⁷¹⁾라고 하여 일본정부는 종래부터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관할권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는 한국에 의해 일본영토가 침범 당했다고 하면서도 자위대를 동원하여 영토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영토는 아니라고 하여 한국의 관할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일본정부의 입장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일본국민들도 독도가 당연히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본질을 제대로 일본국민들에게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현행 헌법이 개정되어 정식군대를 갖게 된다면, 일본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일본정부를 압박함으로써

70)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8.

71) 전게서,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p.1199.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한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적대적의 국가가 되어 양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하루빨리 일본정부는 독도의 본질을 일본국민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6. 맺으면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사록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에 대한 한국 관할권 인정 -1965년 ‘한일협정’에서 신 한일어업협정까지-」를 분석했다. 위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대전 종전으로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결정하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기 시작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처리되었다. 그 증거로서 미일행정협정에 의해 주일 미군이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하였는데, 미국이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고 일본에는 통보하지 않고 한국에 훈련장 지정을 해제했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둘째,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는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이 독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하여 결국 일본은 사적인 밀약으로 한국에 대해 현상유지를 요구하면서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것이다.

셋째, 한일협정에 의해 한국이 독도를 실제로 관할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해서 석유개발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개입하여 한일 양국은 대륙붕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공동으로 석유를 개발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독도기점」 주장을 포기하고 기존 한국의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넷째, 한일협정, 한일 대륙붕협정 등에서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간접적으로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는 독도의 관할권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관할통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새로운 협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집안시설을 건립한 것을 기회로 삼아 일방적으로 구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년 유예기간을 제시하여 새로운 어업협정을 강요했다. 결국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는 독도의 영토지위에 관한 문제는 제외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의 관할을 묵인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2016)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253-464.

곽진오(2016) 「일본의 독도무주지 선점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문화학보』 제5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97-216.

독도연구보전협회편(1997)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독도연구보전협회, pp.180-217.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1부:1948-1976)』 동북아역사재단, pp. 45-196.

신용하(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35-332.

----- (1996)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지식산업사, pp.175-201.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264-308.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p.150.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 백산자료원, pp. 157-172.

----- (2008)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p. 135.

----- (20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조작의 계보』 제이앤씨, pp.225-250.

----- (2014) 『일본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p.269-304.

----- (2014) 「1970년대 북부대륙협정에 관한 일본국회의 논쟁」, 『일본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p.269-304.

外務省(2008) 「竹島問題」, 「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外務省.

外務省編(197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明治百年史叢書1 原書房, p.536.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pp.248-273.

島根県(2005) 「竹島問題研究会」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pp.7-19.

-----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 377, pp.135-156.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学出版会, pp.1-108.

田村清三郎(1996)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復刻板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6-160.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pp.3-21.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01.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要旨>

 韓国の独島領土の管轄権に対する日本の認定
 - ‘韓日協定’から‘韓日新漁業協定’まで -

崔長根

本研究は「韓国の独島領土の管轄権に対する日本の認定 - ‘韓日協定’から韓日新漁業協定まで」について分析した。第1に、第2次大戦の終戦で联合国が独島を韓国領土として決定して対日平和条約でも独島が韓国領土として処理された。第2に、韓日協定で韓国が「独島問題は存在しない」という立場を貫徹させた。しかし日本は韓国に対して私的密約を提案して独島の現状維持を要求し、領有権を主張しながらも韓国の管轄権を認めていた。第3に、大陸棚協定では日本は「独島基点」の大陸棚協定を抛棄して独島に対する既存の韓国の管轄権を否定しなかった。第4に、日本は1997年、一方的に1965年の漁業協定を破棄して勝手に1年の猶予期間をきめて新しい漁業協定を強要しながらも韓国の独島の管轄を黙認していたのだ。

 Japan's recognition of Korea's Dokdo territorial jurisdiction
 - From 'Korea-Japan Treaty' to 'New-Japan Fisheries Agreement' -

Choi, Jang-Keun

This study analyzed "Japan's recognition of Korea's Dokdo territorial jurisdiction - From 'Korea-Japan Treaty' to 'New-Japan Fisheries Agreement' - " First, the Allies determine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final battle of World War II and Dokdo were treated as Korea's territory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econd, Korea's position of "Dokdo issue does not exist" in the 'Korea-Japan Treaty' had penetrated, but Japan has proposed a private secret agreement to South Korea for maintaining the current status of Dokdo and yet Japan has claimed territorial sovereignty but recognized the jurisdiction rights to Korea. Third, in the continental shelf agreements Japan has not denied Korea's Dokdo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Japan gave up "the Dokdo as a reference point". Fourth, Japan abandoned the fisheries agreement of 1965 in 1997 unilaterally and required. to determine the new fisheries agreement after one-year Japan has admitted. Korea's Dokdo territorial jurisdiction